O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주요 질의 내용

01 용해로 등 5종설비 설치 · 이전 · 변경의 경우 금속가공제품제 조업 또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만 제출대상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1항은 업종대상(2개업종), 2항은

산업안선보건법 제48조 1항은 업송대상(2개업송), 2항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용해로 등 5종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1항과 2항은 별도의 적용규정으로 5종설비는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적용됨.

02 공사착공이란?

관련고시 제2조(정의)4호에서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시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목공사 등 전체공사의 시작, 사무실 등의 공사가 아닌 계획서 심사대상 시설물 및 설비의 착공 시점을 의미함.

03 신설예정 공장의 한국전력공사 수전계약용량은 300kW이상 이나 사용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200kW일 경우 제출 대상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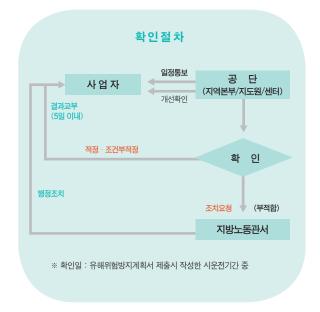
2개 대상업종의 경우 한전 수전계약용량이 아닌 신설 또는 이전하는 사업장의 사용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kW이상일 경우 해당됨.

2개 업종의 기존 가동중인 공장에서 설비의 증설 · 교체 등으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으로 전체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300kW이상이 될 경우에도 해당됨.



○ 심사 및 확인 절차





◯ 지역별 문의 및 제출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예정 지역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지도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동작구 노랑진로179(유한양행빌딩)	02-828-1631
서울북부지도원	서울시 중구 칠패길 5(우리빌딩7,8층)	02-3783-8343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103 (대한교원공제회관2층)	033-815-1013
강릉센터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강릉시청 내 15층)	033-655-1863
부산지역 본부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86-49	051-520-0527
경남동부센터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055-371-7500
울산지도원	울산시 남구 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052-226-0520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중앙로159	055-269-0570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96
경 북동부 지도원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4-4	054-271-2033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5층)	054-478-8015
경인지역본부	인천시 서구 한빛로15	032-570-7220
부천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54-8 (삼진빌딩2층)	032-680-6533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37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5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1-259-7126
성남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06-2 (소곡회관 4층)	032-785-3322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2 (센트럴시티웨딩홀 2층)	031-481-7542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무진로565(무역회관 8,9층)	062-949-8776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78 (노동부종합청사4층)	063-240-8534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85	061-689-4922
제주지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연삼로 495	064-797-7502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4-7	042-620-5612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3로 12 (한국통신건물3층)	043-230-7124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불당동 725	041-570-3425

안전한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십니까?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란?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으므로써 근원적 안전성 확보와 근로자 안전 · 보건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미제출 등: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공시중지명령 위반 등: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공사착공 15일전까지
-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제출처: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 지도원 · 센터
- 수수료 납부: 계획서 제출 시 가상계좌 안내
- 제출서류
-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 관련자료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사업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자료실 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고시, 신청서 및 제출서식, 작성모델)

○ 제출대상

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다음의 2개 대상업종 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설비 중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제조업 사업장에서
-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일체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전기 정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이거나
-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 증설 또는 교체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이상일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업종

233 시멘트,석회,플라스터및 그 제품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0	시킨트, 극의, 글이트의 첫 그 제곱제포함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	콘크리트,시멘트및 플라스터제품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성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및블록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및기타구조용콘크리트제품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기계점 제조합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기다 역제품 제조합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벽돌.블록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1	구조용 금속제품,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050	기다 교소기교체표 제품이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기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기공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	금속파스너,스프링및금속선기공제품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금고 제조업
25993	수동식식품가공기기및금속주방용기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설비를 신설·이전 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3톤 이상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 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교체 · 변경 또는 추가 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자치
-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 정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5. 고온(350℃) 또는 고압(1M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 전력 50kW이상을 사용하는 건조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건조설비를 건조부의 내용적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 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제외)

-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을 취급하는 배풍량의 합이 60㎡/min 이 상인 국소 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 공기정화 장치,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관리대상물질 또는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배풍량의 합이 150m³/min 이상인 것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다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 핵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핵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함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 알루미늄 / 황화수소

- ❖ 관리대상 물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
- ❖ 분진작업: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별표1)